

연구윤리지침

제정일: 2009.12.08

개정일: 2021.12.21

담당부서: 연구처 - 연구윤리센터(02-2123-514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지침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4조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마.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함)
- 바.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 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 나.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 다.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 받아야 한다.

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5.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의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3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10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개정 2021. 9. 17.>

제6조 (연구 과정 ·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적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 ②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연구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 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제8조 (기본 의무)

- ①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의 인종, 성,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④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보호,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 · 실험폐기물 · 방사능 · 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연구자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5장 심사윤리

제10조 (심사의 공정성)

본교 구성원이 연구논문의 심사나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본교 구성원은 심사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피심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이해상충

제12조 (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3조 (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7장 연구대상의 보호

제14조 (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전면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 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 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